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시정명령)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제3호 및 같은법 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시공달 대상 업체 및 현황

업체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근거
주식회사건화이앤씨 (류*호)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(인천서구2023-사-05)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-28 201호 (석남동)	시정명령 (2024. 8. 6.)	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

2. 공고기간 : 2024. 8. 8. ~ 2024. 8. 23.

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(<http://incheon.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